

**기안용지**  
(전화: 4801365)

문류기호 문서번호	도청 30310	구 청 장	시 생 상 89.4.1 특별취급 총련 13-기청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9. 3.		
보조 사	부 구 청 장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	조 기 기안 도시정비과장 실 직 선	문 서 생 상 1989.3.14 총련
기안책임자	도시정비국장 실 직 선		
장 소	국 안 참 조	장 소	시 장 (강동구청장)
주 소			
제 목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	
내 용	<p>1. 서신 30310 - 98 (89. 3. 17) 호와 관련입니다.</p> <p>2. 우리구 관내 문촌동 70의 99. 100의 1 및 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(도로)에 대하여 서울시 고시 제 131호 (89. 3. 1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고시한 자 간의 지적승인고지 합니다.</p>		

2308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호 (89. 3. 1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89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번호	구분	등급	류별	폭원 (M)	연장 (M)	시	집	종	점	비 고
1	기정	소로	1	10	30	강동구 문촌동			70-100	
	변경	소로	1	10	30	"			"	위치조정
2	기정	소로	2	8	50	강동구 암사동			산 59-5	
	변경	소로	2	8	50	"			"	매 지
3	신설	소로	2	8	300	강동구 암사동			명일동 산 322-1	

나. 지적승인 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2309

이 권에 관한 권리행사는 본 고시로 인한 것입니다.

제 3안

수신 건설부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장

참조 도시계획과장

제목 같은건 보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호 (89. 3. 1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

계획시설 (도로)에 대하여 따로붙임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와 같이 지적승인 하  
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1989. 3. 22  
서울특별시  
도시계획과

제 4안

수신 총무처장관

발신: 서울특별시장

제목 관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 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관보 게재 구분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3조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

제 5안

참조 시설계획과장

제목 같은건 보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호 (89. 3. 1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

시계획시설 (도로)에 대하여 따로붙임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승인

하였기 보고합니다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,

제 6안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참조 시민과장

제목 관인날인 요청

1. 우리구 관내 둔촌동 70의 99호 일대 및 암사동 421번지일대 도시

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에 따른 공문시행을 위해 관인날인 요청하오니 조치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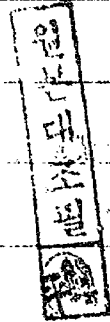
첨부 1) 총무처, 건설부 시행공문 사본 1부.

제 7안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같은건 통보

1. 서울시 고시 제 131호 (89. 3. 17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



외서실 (도보)에 대하여 변경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음을 통보하오니, 관련업무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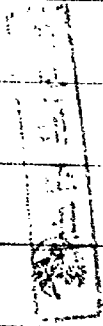
참고하길 바라며,

2. 해당동장은 본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것.

첨부 1. 고시안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지적과, 도목과, 수도공작과, 건설관리과, 세무1과, 건축과, 재무과, 주택과,

등촌2동, 암사1동, 명일1동 (장)

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57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보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호 (89. 3. 17)로 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보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장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89.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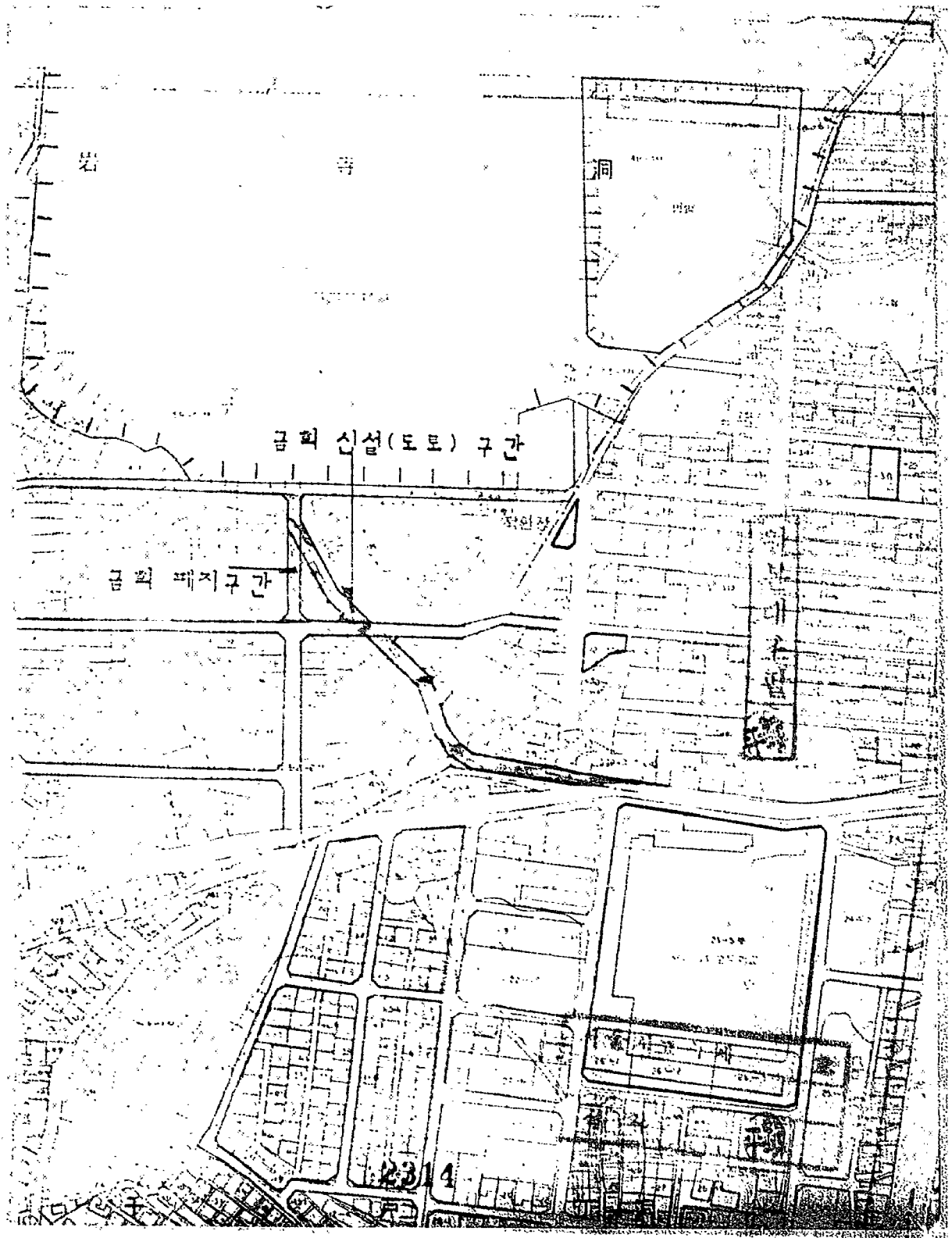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강. 도시계획시설 (도보) 지적승인 조서

번호	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시 점	종 점	비고
1	기정	소도	1	10	30	강동구 돈촌동 70-99	강동구 돈촌동 70-100	
	변경	소도	1	10	30	"	"	위치조정
2	기정	소도	2	8	50	강동구 암사동 421-28	강동구 암사동 산 59-5	
	변경	소도	2	8	50	"	"	폐지
3	신설	소도	2	8	300	강동구 암사동 산 59-5	강동구 명일동 322-1	

나. 지적승인 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

岩

寺

洞

금회 신설(도로) 구간

금회 폐지구간

2314

洞內城

서문대계획서

비경대계획서

외계중학교  
예정지

인본내소필

강

서울대학교  
逋

2315